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19
----------	---------

발의연월일 : 2021. 2. .

발 의 자 : 강선영, 송순효, 김현희, 이충현
신낙형, 김동협, 박성호, 윤유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업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3.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2019. 6.



행 정 안 전 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순 서

I. 목 적	1
II. 지정(평가) 기준	1
III. 지정 절차	2
IV. 지정 업체 수 및 지정 시기	3
V. 사후 관리	3

※ 붙임1 착한가격업소 세부평가 기준

붙임2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심사방법

붙임3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I 목 적

-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개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
-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 착한가격업소 적용범위 구체화 》

-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자지단체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그 조례에 따름

II 지정(평가) 기준

1 가격 기준 (45점)

- 가격 수준 : 해당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20점)
* 해당 지자체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격 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15점)
-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 (10점)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30점)

3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20점)

-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 (10점, 차등배점)
- 운영 및 시설 부문 :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 (각 5점)

※ 기준별 세부항목은 붙임2 평가표 참고

4 공공성 기준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5점)

⑤ 가점 부여 기준 (10점)

-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정부시책 등 사회적가치 반영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등 자치단체장이 10점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 평가표(붙임 2)에 의거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

Ⅲ 지정 절차

①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②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지역 내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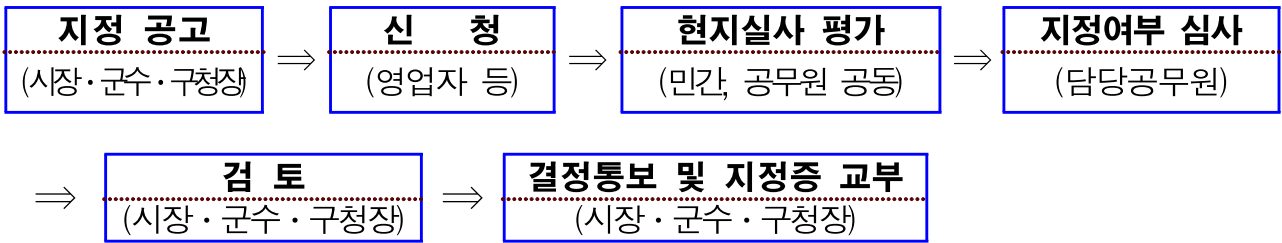
③ (현지 실사평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2)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 참여

④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지정 여부 검토를 거쳐 영업자에게 3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통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를 조속히 교부할 것.

< 지정 절차 >



- ⑤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후, 업소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내용을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IV 지정 업체수 및 지정시기

- ① **(지정 업체수)**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개인 서비스 품목이 관리·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
- ② **(지정 주기)** 연 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지정도 가능
- ※ 매년 6월중 착한가격업소 실태 조사 후 현황 보고 (6월말 기준, 행안부)

V 사후 관리

- ① **(정기 재심사)** 시도 반기별 실시
- (절 차)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
 -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신청 업소 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여부확인 후 재지정
- ② **(수시 재심사)**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대 상) 지역별 평균물가보다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절 차) 「현지실사 평가」 생략 가능
 - (기 능)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

③ (지정 취소)

-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 붙임 2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합이 7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
- 당해 시·군·구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 착한가격업소 지정 승계는 변경 소재지 지자체의 기준을 따름

④ (지정 취소 후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 착한가격업소 현황 정비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 점검표 [업소명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총 점				100
<p>※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p>				위생모범업 소여부 (○, ×)
가격 기준 (45점)	가격수준 (2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20
			평균가격 미만(5~10%)	15
			평균가격 이하(5%이하)	10
			업소가격 > 평균가격	지정제외
	가격안정 노력(15점)	가격인하	1년 내	15
			1년 이상	13
		가격동결	1년 미만	11
			6개월 미만	9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점)	업소 내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30% 이상	10	
		20%~30%	8	
		10%~20%	5	
위생·청결 기준 (30점)	주 영 업 시 설	주방 등 (10점)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5
		주방 등 (10점)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5
	매장 내 (10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10	
	화장실 (5점)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5	
	건물 등 환경(5점)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5	
품 질 서비 스 기 준 (20점)	이용만족도 (10점)	업소 이용 후 이용전반에 대한 친절도 및 만족도	상 10 중 5 하 -	
	운영 (5점)	업소 종사자의 복장 및 위생상태, 냉·난방 가동 등	5	
	시설 (5점)	이용안내문, 표지판, 이용편의시설 구비 여부	5	
공공성 기준 (5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	
		일부만 이행	3	
		이행사항 없음	0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점 부여 (10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과 정부기관, 자치단체 표창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율 결정

□ **신규 지정**

-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기준의 합이 10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기 지정 업소의 재심사**

< 적격여부 심사표 >

분야	세부 점검 기준		적격여부		비고 (사유, 일시등)
기준 미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업소가격 > 평균가격)		부적격		
	점검결과,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미만		부적격		
	점검결과, 품질·서비스기준 합의 평점이 총 10점 미만		부적격		
폐업	지정 업소가 폐업(단, 업소명 변경은 제외)		부적격		
자진 취소	자진취소 희망 (업주가 자진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부적격		
기타	휴업 기간	1개월 이상	부적격		
	행정 처분(2년 이내)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부적격		

▪ 프렌차이즈업소는 전국 / 지역단위 불문 선정배제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검색)

○ (유의 사항)

-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지정 취소
- 비외식업의 경우 점검기준 평점확인
- 지정 취소 확정 후, 인증 표찰 회수 및 인센티브 제공 중단 조치
-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D/B 현행화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oodprice.go.kr>

붙임3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2018. 7. 20. 기준]

사·도	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계	%	소 계	한 식	일 식	중 식	양 식	기타 외식	소 계	세 탁업	아·미 용업	목 욕업	숙 박업	기타 서비스업
합계	5,690		4,369	3,679	54	416	62	158	1,321	189	954	95	34	49
%		100	76.8	64.7	0.9	7.3	1.1	2.8	23.2	3.3	16.8	1.7	0.6	0.9
서울	856	15.0	581	475	10	67	10	19	275	35	207	6	4	23
부산	571	10.0	487	393	8	41	11	34	84	10	59	7	4	4
대구	228	4.0	170	122	5	37	2	4	58	6	47	5	0	0
인천	216	3.8	166	119	5	33	2	7	50	13	37	0	0	0
광주	201	3.5	136	109	3	15	2	7	65	8	40	10	1	6
대전	282	5.0	218	183	0	28	3	4	64	7	52	3	0	2
울산	113	2.0	78	65	0	10	0	3	35	7	25	3	0	0
세종	23	0.4	20	18	0	0	2	0	3	1	2	0	0	0
경기	765	13.4	579	488	6	49	6	30	186	34	141	6	2	3
강원	330	5.8	264	237	1	13	5	8	66	13	43	3	6	1
충북	323	5.7	271	237	4	18	2	10	52	6	40	3	2	1
충남	286	5.0	223	193	2	14	5	9	63	7	52	2	2	0
전북	317	5.6	253	223	2	21	4	3	64	4	48	4	3	5
전남	314	5.5	267	242	3	15	3	4	47	6	27	13	1	0
경북	421	7.4	294	252	3	31	1	7	127	25	84	15	2	1
경남	312	5.5	260	226	1	21	3	9	52	6	27	15	1	3
제주	132	2.3	102	96	1	4	1	0	30	1	23	0	6	0